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09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나. 법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정기조사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7조)
- 다. 등록문화재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2조)
- 라. 등록문화재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3조)
- 마. 등록문화재의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64조)
- 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 규정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65조)
- 사. 등록문화재의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안 제66조)
- 아. 등록문화재에 적용할 준용사항을 규정(안 제67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 (2019. 5. 23. ~ 6. 12.)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말한다.
2. “문화재자료”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록문화재”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를 말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5조”를 “영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3조”를 “영 제13조”로 한다.

제2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시는 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장의 제목 “보칙”을 “등록문화재”로 한다.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를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로 하고,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시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법 제2조제1항 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제63조(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등록문화재를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64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65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법 제7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가.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를 변경하는 행위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를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1)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2)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견  
폐울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
  2.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
  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  
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 제66조(등록의 말소) ① 시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  
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등록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67조(준용 규정) ① 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  
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

② 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사항의 취소,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조사, 보조금, 경비 부담, 관람료의 징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3조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제68조 앞에 “제12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73조(중전의 제67조)제1항 중 “제66조”를 “제7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을 “영 제4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을 “영 제48조제2항”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말한다.</p> <p>2. “문화재자료”란 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장이 향토 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p> <p>&lt;신 설&gt;</p> <p>3. ~ 7. (생략)</p> <p>② (생략)</p>	<p>제2조(정의) ① ----- -----.</p> <p>1.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를 말한다.</p> <p>2. “문화재자료”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를 말한다.</p> <p>3. “등록문화재”란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등록한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를 말한다.</p> <p>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u>&lt;신 설&gt;</u></p>	<p><u>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u></p> <p><u>③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등록문화재관리단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문화재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u></p> <p><u>제64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u></li> <li><u>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u></li> <li><u>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u></li> <li><u>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u></li> </ol>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5. <u>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u></p> <p>6. <u>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u></p> <p>7. <u>제65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 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u></p> <p>8. <u>법 제7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u></p> <p><u>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u>  <u>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1. <u>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u></p> <p>가. <u>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u></p>

현행	개정안
	<p><u>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u></p> <p><u>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u></p> <p><u>1)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u></p> <p><u>2)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u></p> <p><u>3) 그 밖의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u></p> <p><u>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u></p> <p><u>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u></p> <p><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법 제7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견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등록문화재</p> <p>2. 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등록문화재</p> <p>3. 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등록문화재</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p> <p>제66조(등록의 말소) ① 시장은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p>

현행	개정안
<p>&lt;신 설&gt;</p>	<p>있다.</p> <p>② <u>등록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u></p> <p>③ <u>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u></p> <p>제67조(준용 규정) ① <u>등록문화재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는 “등록문화재”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재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본다.</u></p> <p>② <u>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사항의 취소,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권에 의한 조사, 보조금, 경비 부담, 관람료의 징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u></p>



현행	개정안
3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신설되는 조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음

4. 작성자 : 역사문화재과 행정6급 전소영(02-2133-2613)